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4년 10월 5일

나. 제안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4년 10월 6일

라. 상정일자 : 2004년 10월 13일

제9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복지환경국장 김 경 배

나. 제안이유

음식물쓰레기의 수집, 운반, 처리 수수료의 부과, 징수를
현실에 맞게 조정하고

음식물쓰레기 수집, 운반 및 재활용대상자를 수정하기 위함.

다. 주요내용

○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변경(제7조)

- 관리대장 보존기간 변경 : 1년 → 2년
- 변경신고사항 및 신고필증 교부사항 신설

○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설치대상 확대(제10조제2항)

- 100세대 이상 → 20세대 이상

- 음식물쓰레기의 수집, 운반 처리수수료 변경(제11조제1항)
 - 음식물쓰레기의 수집, 운반 처리수수료 중 전용수거용기 사용시
ℓ 당 11원 ⇒ [별표3]으로 세분하여 징수
 -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: 세대당 월 1,500원
 -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배출업소 : 객실, 객실면적 30㎡ 이하 월3,000원, 객실, 객실면적 31㎡이상 60㎡이하 업소당 월6,000원, 객실, 객실면적 61㎡이상 100㎡이하 업소당 월9,000원
- 음식물쓰레기의 수집, 운반 및 재활용 대상 수정(제12조제2항)
 - 감량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 등 ⇒ 감량의무사업장 등

라. 참고사항

- 근거법령
 - 폐기물관리법 제13조, 제15조
 -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8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정 석 광

- 본 조례안은 음식물쓰레기의 수집, 운반, 처리 수수료의 부과, 징수를 세분화하여 현실에 맞게 부과, 징수하는 개정 조례임.
- 주요 내용으로는
 -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변경(제7조)
 - 관리대장 보존기간 변경 : 1년 → 2년
 - 변경신고사항 및 신고필증 교부사항 신설
 -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설치대상 확대(제10조제2항)
 - 100세대 이상 → 20세대 이상
 - 음식물쓰레기의 수집, 운반 처리수수료 변경(제11조제1항)
 - 음식물쓰레기의 수집, 운반 처리수수료 중 전용수거용기 사용시
ℓ 당 11원 ⇒ [별표3]으로 세분하여 징수

-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: 세대당 월 1,500원
-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배출업소 : 객실, 객실면적 30㎡ 이하 월3,000원, 객실, 객실면적 31㎡이상 60㎡이하 업소당 월6,000원, 객실, 객실면적 61㎡이상 100㎡이하 업소당 월9,000원
- 음식물쓰레기의 수집, 운반 및 재활용 대상 수정(제12조제2항)
 - 감량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 등 ⇒ 감량의무사업장 등으로 수정하는 사항으로,
- 조례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이나,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